

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발급번호		처리기간	즉시	
확인 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군번	
	주소			
복무사항	입대일(소집일)		전역예정일(소집해제예정일)	
복무구분 및 발급기관	복무구분	발급기관	발급부서	담당자(연락처)
	[] 현역병(육군·해군·공군·해병대)	국방부		
	[] 상근예비역			
	[] 의무경찰	경찰청		
	[] 해양의무경찰	해양경찰청		
	[] 의무소방원	소방청		
	[] 사회복무요원	병무청		
	[] 대체복무요원	법무부		

위와 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격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발급기관

직인

유의사항

- 1.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2. 법무부, 국방부, 병무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소방청과 국방부 및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(전자형태의 확인서를 포함)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
유효기간: 발급일부터 3개월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